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22

제출연월일	2007. 7. 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사회적문제인 고령화 급진전과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연 소득 1,200만원이하)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중 담보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25%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
「한국주택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에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입법예고(2006. 11. 13. ~ 12. 2.)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